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 안민석·김승원·김영호

류호정 • 박성준 • 양경숙

양정숙 · 윤재갑 · 이상민

이상헌 • 전혜숙 •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, 관광숙박시설·야영장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 및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(안제19조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공표"를 "공표, 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"으로 한다.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관광숙박업 등의 등급) ①	제19조(관광숙박업 등의 등급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
	병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
	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
	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
	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
	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
	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
	<u>수 있다.</u>
⑤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	<u>⑥</u>
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	
령령으로 정하고, 등급결정의	
유효기간・신청 시기・절차 및	
등급결정 결과 <u>공표</u> 등에 관한	<u>공표</u> , 제5항에 따
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	른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
정한다.	간 연장